**이 지침의 목적**

10주년을 맞은*'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각한 정신질환 정책 선언'*에 즈음하여, 제 223차총회(2018년)는 정신건강의 지속적 관련성과 정신보건 부처의 선진화 및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2020년에 걸쳐 25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의 구축하여 교회 전체에 걸친 정신건강 사역을 하도록 요청했다 (제10-11호 항목). 보조금 프로그램은 더 큰 2개년 정신 건강 계획의 한 요소이다.

모든 미국장로교 교회, 중간공의회 및 신학교가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초청되고 권장된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이 신청자 안내서의 목적은 보조금 신청자에게 정신건강 사역 보조금 절차에 대한 단계별 개요를 시작부터 끝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단계 1: 준비**

잠재적 신청자가 취할 첫 단계는, 신청서 양식과 *모든* 보충 자료들을 검토하는 것으로(pcusa.org/mentalhealth에서 확인)보조금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프로젝트가 보조금 프로그램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잠재적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보조금의 목적은 장로교 회중, 중간공의회 및 신학교로 하여금 교회가 정신건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교육시키고,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 주는 정신 건강 사역을 시작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옹호를 확대하기 위해.
* 정신건강 상태, 특히 심각한 정신 질환을 둘러싼 오명을 제거하기 위해.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을 더욱 환영하고 포용적이며 지지적인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해.

모든 보조금 지원자는 미국장로교 단체여야 하지만, 교회, 중간공의회, 신학교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외부 파트너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신청은 그 관계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보조금 프로그램의 시간적 제한과 한정된 가용 금액을 고려할 때,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직원 직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전문적 학위를 추구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후원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보조금은 보통 최대 1만 달러에 이르는 일회성 상금이 될 것이다. 몇몇 프로젝트들은 1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제안은 여러 미국장로교 단체(교회, 노회, 신학교 또는 그들의 조합)의 참여를 통해 보여 지는 제안의 강도와 잠재적 영향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자금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 이상의 실행 권고사항의 이행에 있어 나타나는 예외적인 약속을 보여준다고 판단될 수 있다.

**단계 2: 보조금 신청**

다음 단계는 교회, 중간공의회 또는 신학교가 정신건강 사역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는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에 대한 지침을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는 교회는 노회 서기 또는 노회 지도자로부터 편지의 형태로 된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는 인식을 높이고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넓혀줍니다.

신청자는 다음 심의위원회 회의를 위한 제출 기한을 확인하거나 재정 관리 매니저 [lacey.hunter@pcusa.org](mailto:lacey.hunter@pcusa.org) ~~또는 정신건강 사역 총무~~[~~donna.miller@pcusa.org~~](mailto:donna.miller@pcusa.org)에게 연락하여 신청서 및 보충 자료의 종이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단계: 신청서 접수 및 완료 통보**

신청서 및 보충 보증서(필요한 경우)가 접수되고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면 모든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보조금 프로그램 목적 및 지침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효력에 대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그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의위원회의 다음 회의에서 검토할 제안서 목록에 해당 신청서를 추가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4 단계: 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보**

신청서가 완료되면 장로교 선교국 보조금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구성된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배정됩니다. 검토위원회에는 긍휼/평화/정의 사역부의 사역 부디렉터, 정신건강 사역 담당자, 재정 행정 담당 매니저 등이 포함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회의 전에 접수된 모든 제안서를 연례 회의에서 검토하고 숙고합니다. 보조금 신청서는 보조금 프로그램 기간(2020년 12월 종료 예정) 중 연중 내내 접수됩니다.

보조금 신청자는 심의위원회 회의 후 2주 이내에 승인/거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그 후 승인된 보조금 파트너에게 W-9를 완료하고, 은행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면 기금이 처리됩니다.

**5 단계: 프로젝트 완료 및 프로젝트 학습 확보를 위한 보고서 준비**

보조금 수령 후 12개월 이내에 임시 또는 최종 보고서(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다름)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사역 총무에 의해 추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계약서를 통해 해당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정신건강 사역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지출된 보조금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1)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2) 재정 회계, (3) 프로젝트의 측정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척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기술 부분은 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요약하고, 다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1) 보조금의 예상 영향; (2) 보조금의 실제 영향; (3) 보조금 사용의 결과로 배운 것; (4) 보조금이 소진된 후 프로그램/프로젝트/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신건강 사역부 직원인 Kathy Riley [Kathryn.Riley@pcusa.org](mailto:Kathryn.Riley@pcusa.org) 또는 CPJ의 재정 관리 매니저인Lacey Hunter [Lacey.Hunter@pcusa.org](mailto:Lacey.Hunter@pcusa.org) 에게 문의하십시오.

정신건강 사역의 자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www.pcusa.org/mentalhealth](http://www.pcusa.org/mentalhealth).